

2019년도 제2회 태백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9년도 제2회 태백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0. 24.

태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

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계급	직렬	직류	선발예정인원	시험과목(1·2차 시험 병합실시)		시험시간
				제1과목	제2과목	
계	6개 직렬	7개 분야	13명			
9급	사서	사서	2명	사회	자료조직개론	60분 (10:00~11:00)
	공업	화공	2명	화학	유기공업화학	
	농업	축산	1명	축산	가축사양	
	녹지	산림자원	2명	생물	임업경영	
	의료기술	의료기술 (임상병리)	1명	생물	공중보건	
	시설	일반토목	4명	물리	응용역학개론	
건축		1명	물리	건축구조		

2

시험방법

□ 시험절차 및 방법

공고 및
응시원서 접수

- 홈페이지 공고 : '19.10.24. ~ 11. 2. (10일간)
- 응시원서 접수 : '19.11. 4. ~ 11. 5. (2일간)



서류전형

- 자격요건 심사
※ 거주제한 등 자격요건 심사



필기시험

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
- 시험과목 : 과목당 100점만점, 과목별 20문제, 4지 택1형
(1차·2차 시험 병합실시)



면접시험

※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

-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·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
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3

응시자격

○ 연령 : 만 18세 이상(2001.12.31. 이전 출생한 사람)

– 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
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.

○ 거주지 제한

- 2019년 제2회 태백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

① 공고일 전일(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)부터 최종시험(면접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태백시로 되어있는 사람(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

② 공고일 전일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

※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
○ 자격증 제한 :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

① 사서 : 준사서 이상

② 의료기술 : 임상병리사

③ 공업(화공), 농업(축산), 녹지(산림자원), 시설(일반토목/건축)

- 태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(이하 규칙) 제15조 제1항 별표5, 별표 5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사람

1.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·기능분야 자격증

직 렬	직 류	대상 자격증
공업	화공	기술사: 화공, 세라믹, 화공안전, 가스, 품질관리, 식품 기능장: 위험물, 가스 기사: 화약류제조, 화공, 산업안전, 가스, 품질경영, 식품, 화학분석 산업기사: 화약류제조, 위험물, 산업안전, 가스, 품질경영, 식품 기능사: 화학분석, 위험물, 가스

농업	축산	기술사 : 축산, 식품 기사 : 축산, 식품 산업기사 : 축산, 식품 기능사 : 축산, 식육처리, 식품가공
녹지	산림 자원	기술사 : 조경, 종자, 산림, 농화학 기능장 : 산림 기사 : 조경, 종자, 산림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임산가공 산업기사 : 조경, 종자, 산림, 식물보호, 임산가공 기능사 : 조경, 종자, 산림, 임업종묘, 임산가공
의료기술	의료기술	기술사 : 방사선관리, 기사 : 의공, 산업기사 : 의공
시설	일반 토목	기술사 :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 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 산업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 기능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석공, 전산응용토목제도, 측량
	건축	기술사 : 건축전기설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안전, 소방 기능장 : 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 기사 : 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 산업기사 :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건축, 건축목공, 방수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 기능사 : 전산응용건축제도, 타일, 미장, 조적, 온수온돌, 유리시공, 비계, 건축목공, 거푸집, 금속제창호, 건축도장, 철근, 방수, 실내건축, 플라스틱창호

※ 의료기술은 임상병리사 자격보유자에 한함.

2.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(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)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

직렬	계급		5급	6급	7급	8급	9급
	사	서					
사	사	서	1급 정사서(5)	1급 정사서 2급 정사서(6)	2급 정사서(3)	2급 정사서	준사서

4

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
'19. 11. 4. ~ 11. 5. (09:00~18:00)	필기시험	2019. 11. 8.(금)	2019. 11.16.(토)	2019. 11.20.(수)
	면접	2019. 11.20.(수)	2019. 11.22.(금)	2019. 11.29.(금)

5

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19. 11. 4. ~ 11. 5. (2일간) 09:00~18:00

○ 접수장소 :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(☎ 033-550-2028)

○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(등기)

단, 우편(등기)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
※ 우편(등기)접수 : (26023)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1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

**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편물에 동봉하여야 하며, 접수된 응시표는 이메일로 송부함

○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(시청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) 1부.

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.5cm×4.5cm) 사진 2매 부착

- 응시수수료 : 5,000원

※ 응시자는 태백시 수입증지(5,000원권) 인증 후 원서 제출(인증처 : 시청 1민원실)
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
(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

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(홈페이지 다운) 각 1부.

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.

④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사항 포함) 1부. *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

⑤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. (필수자격증 : 전원제출, 가점자격증 : 해당자)

⑥ 경력증명서(근무처별) 각 1부. (해당자에 한함)

6

가산 특전

○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특전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,5%,3% 직렬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 해당사항 없음	*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- 선발예정인원 30% 초과할 수 없음
의사상자 등	직렬별 선발인원이 9명 이하 해당사항 없음	* 의사상자 등 가산 특전 - 선발예정인원 10% 초과할 수 없음

-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

1) 『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,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
관한 법률』 제29조, 『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,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,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합니다.

2)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(직급/직류/임용예정기관)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3)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,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○ **공통적용 가산점** :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만점의 5% 이내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분야	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(전산직류 제외)	가 산 비 율	가 산 비 율
통신 정보 처리 분야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보안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	1%	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.5%
사무 관리 분야	컴퓨터활용능력1급	1%	워드프로세서(1급) 컴퓨터활용능력2급 0.5%

※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“자격증 소지자”에게 부여하며,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.
-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.

-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**4년 이내**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**전출(전보)**이 제한됩니다.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 될 수 있습니다.
 -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(시정소식/알림마당/시험정보)란에 공고(게시)하며,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PDA, MP3, 무선 호출기, 이어폰 등), 전산기기(전자수첩, 전자계산기 등) 및 수정액,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,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,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임용결격사유,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필기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 득점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 법규를 적용합니다.
-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부서(☎033-550-202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